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2조제1항제13호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 공관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다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5)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1) 대중음식점·다방·기원

(2) 다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안마시술소

(4)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

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인 제조업·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장 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5. 근린공공시설

가.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수도장 :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7. 노유자시설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8.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9.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11.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 : 제4호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 14. 위락시설

가.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무도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특수목욕장

다.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 15.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6.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유독물판매소

아. 총포판매소

#### 20.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21. 자동차관련시설(중기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 22. 동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장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동물검역소
- 2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24. 식물관련시설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 25.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26. 교정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27. 군사시설
- 28.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촬영소
- 29.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30. 장례식장
- 3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32. 청소년시설
  - 가. 생활권청소년시설(청소년회관·학생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자연권청소년시설(심신수련장·야영장·자연학습원·학생교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유스호스텔